**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주식회사케이티스카이라이프(이하"회사"라한다)가 행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공사, 용역, 콘텐츠 계약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업무처리지침,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의 참가자격)**

① 경쟁 입찰에 참가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당해 입찰의 목적물 제조•공급 등에 필요한 시설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을 것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 요건에 적합할 것

3.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을 것

4.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

5. 기타 계약 목적물의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할 것

②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러한 자와의 계약이 회사의 영업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입찰 참가를 금지할 수 있다.

③ 회사와 소송 또는 분쟁중인 자는 입찰 참가를 금지할 수 있다

**제4조(전자계약시스템 업체등록)**

① 회사와 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의 전자계약시스템(<http://epro.skylife.co.kr>)

(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업체등록을 완료하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체등록의 기준 및 방법 등은 “전자계약시스템이용약관”(이하 “시스템 이용약관”이라 한다.) 및 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용자인증서비스 설명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계약담당에게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 자격요건 증명서류

3. 인감증명서 1통

4. 기타 입찰공고 또는 통지에서 요구한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사본의 내용이 원본과 일치함을 보증하기 위하여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를 2인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한다.

**제6조(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입찰에 관한 서류" 라 한다)를 열람 또는 교부 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권유문

2. 입찰유의서

3. 표준계약서(소정서식)

4. 일반조건

5. 특수조건

6. 설계서, 규격서(“기술요구서”를 포함한다. 이하같다), 물량내역서 및 동 물량

에 대한 단가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설명서, 현장설명서, 과업지시서

7. 회사에서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7조(관련규정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와 입찰관련 규정을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 과정에서 발견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의 제출 또는 송수신 마감일 전일까지 회사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현장설명)**

① 공사입찰의 현장설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또는 건설기술관리법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해당 기술자로 인정되고 있는 자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수첩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5조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구매설치 일괄계약의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제9조(입찰보증금)**

① 계약담당은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단가입찰의 경우에는 그 단가에 총 입찰예정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입찰보증금 납부가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낙찰 후 계약체결 불이행시 면제된 입찰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겠다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입찰보증금은 입찰 참가 신청 마감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단, 장비평가를 하는 2단계 경쟁 입찰의 경우 개찰 일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⑤ 입찰보증금의 제출기한 및 입찰보증금액을 입찰공고문에 별도 명시한 경우는 입찰공고문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⑥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을 회사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10조(입찰참가)**

①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전자계약시스템 업체등록 또는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제5조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여 대리인으로 위임할 수 있다.

③ 회사의 불성실업체 관리지침에 의한 불성실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위임할 수 없다.

**제11조(견품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하였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견품에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상호포함)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 이행 후, 낙찰자 이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당해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요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이 경우 회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훼손과 반환에 따른 경비 부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문에 별도 명시한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12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참가신청서에 신고된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 입찰서의 입찰금액은 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병기된 금액이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④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제6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권유문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서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직접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입찰자는 입찰서에 중대한 오기가 있어 계약담당이 개찰 현장에서 이를 인정한 경우 이외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제14조(입찰의 무효)**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입찰에 대하여는 이를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 보증금 납부일까지 소정의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입찰자(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업체(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동일업체 정의: 1대 주주 및 1대 주주 직계 가족이 타 업체 지분의 20% 이상

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동일 업체로 본다.

5. 계약담담은 상기 4호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입찰에 참가한 자에게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입찰 참가한 자는 계약담당이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한다.

6.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

찰

7.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 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의 취소 의사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담당이 입찰포기 승인을 한 입찰

8. 제안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9. 입찰관련 제출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10. 회사의 이익이나 명예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사례가 있는 경우

11. 기타 회사의 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입찰의 연기)**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일시, 입찰일 등을 연기할 수 있다.

1.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

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참가자 전원에게 정보통신망, 서신 등의 방법으로 통지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부동산 매각의 경우에는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부칠 수 있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만, 사업 추진상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③ 가격입찰의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개찰장소에서 3회 이내에 한하여 재입찰을 할 수 있다.

**제17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14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③ 물량할당 계약의 경우에는 복수개의 낙찰 단가를 인정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입찰금액과 예정금액을 대조하여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2인 이상을 대상으로 재입찰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입찰가격 및 품질, TCO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에 가장 유리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18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계약담당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으로부터 당해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19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회사와 낙찰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확정된다.

**제20조(현금으로 납부된 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 낙찰자가 현금으로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21조(계약의 이행보증)**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 및 제4조, 물품계약일반조건 제2조 및 제3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조 및 제4조, 콘텐츠계약일반조건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한다

**제22조(불성실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회사의 불성실업체로 제재 받은 경우에는 동 제재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23조(비밀유지의 의무)**

① 입찰자는 회사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입찰참가자 또는 낙찰자는 입찰 외의 목적으로 입찰정보를 사용함에 따라 발생되는 회사의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24조(계약상대자)**

① 회사와 계약하는 계약상대자는 법인, 개인사업자, 개인, 외국법인, 외국인 등 특별한 제한 없이 계약상대자가 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방법에 따라 아래의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경쟁입찰의 경우

- 사업자 구분: 법인사업자

- 신용등급: B+ 이상(또는 이에 준하는 등급)

2. 수의계약의 경우

- 사업자 구분: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개인, 외국법인, 외국인

- 신용등급:

. 법인사업자(외국법인포함): B+ 이상(또는 이에 준하는 등급)

. 기타: 회사에 리스크가 없는 범위에서 회사가 판단

③ 회사는 계약상대자가 법정관리, 화의, 워크아웃 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 당사자와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④ 본조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계약의 성격상 대안이 없고, 특정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

2. 계약이행에 현저한 문제가 없고 회사가 회사의 이익에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25조(기타사항)**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업무처리지침 및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 회사의 계약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부칙**

이 지침은 2014월 4월 7일부터 시행한다.